

의안번호	제 664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358 회)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8월 2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664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8월 21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관리·운용의 효율성 제고
- 충청북도 남북교류사업 협의시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및 심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 일부 개정 등

2. 주요내용

-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관 지정 (안 제7조)
-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 규정 개정 (안 제13조, 제13조의2 신설)

3. 의안전문 : 붙 임

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붙 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2017년”을 “2022년”으로 하고,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”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국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

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2.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4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5.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설치) ① (생 략)</p> <p>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17년</u> 12 월 31일까지로 하며, 「<u>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</u>」 제3 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~④ (생 략)</p>	<p>제4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2022년</u> ----- 「<u>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</u>」 제4조-- ----- -----</p> <p>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기금관리공무원) (생 략)</p> <p>1. 기금운용관 : <u>행정국장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(생 략)</p>	<p>제7조(기금관리공무원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기금운용관 : <u>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국장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</p> <p>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</p>	<p>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</p> <p>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.</p> <p>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</p> <p>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</p> <p>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</p>	<p>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</p> <p>4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</p> <p>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p> <p>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</p>
<p><신 설></p>	<p>제13조의2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.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

현 행	개 정 안
	<p><u>경우</u></p> <p><u>3.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</u></p> <p><u>4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</u></p> <p><u>5.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금번 조례개정안은 충청북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 사업을 촉진하고 기금의 조성재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충청북도 남북 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(유효기간)을 5년 연장을 하고,
- 교류사업 의결시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및 심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부담 사항은 없음

○ 작성자

-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고 행 준